

【 공탁법 20문 】

【문31】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에 찍힌 인영이 공탁자가 공탁서에 찍은 인영과 같더라도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할 질권, 저당권, 전세권의 표시’는 반대급부 조건이 아니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도 포함된다.
- ④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공탁공무원이 신분제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⑤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하고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문32】 가압류해방공탁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가압류해방공탁은 금전 및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이 허용된다.
- ② 가압류해방공탁신청시 그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권자를 기재하면 된다.
-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집행권원으로는 가집행선고부 중급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문33】 공탁물의 출급청구시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법인의 지배인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 ②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③ 제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므로 그 경우 우리나라 또는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법으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여야만 한다.

【문34】 공탁물출급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탁물회수청구권이 행사되어 공탁물이 지급되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②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경우 그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④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채무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통지서가 검찰청에 도달된 때에 통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⑤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35】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포괄승계인은 물론 담보제공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도 포함된다.
-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면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이 없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
- ④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 ⑤ 보전처분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담보권리자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36】 공탁신청시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자격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변제공탁에 있어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에는 각 그 법인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인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하면 되고, 이 경우에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공탁통지서 봉투의 발신인란에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등재되었다면 소유자 불명을 원인으로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을 소유자 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면 된다.
- ⑤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문37】 변제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
- ③ 공탁법 제9조에 규정된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는 공탁자의 서면,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이 있는데, 공탁자의 서면에는 공탁서에 찍은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찍거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피공탁자의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탁자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정한 사정 아래서는 공탁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⑤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문38】 주된 사무소가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둔 갑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확정공탁하고자 한다면 어느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공탁소가 모두 기재된 것은?

<공탁소 관할>
 성남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파주시(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 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③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④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⑤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문39】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변제공탁은 채무자 본인이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탁할 수 있다.
- ② 선례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자기 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
- ③ 납세담보공탁은 세금의 징수유예나 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는 자가 하는 공탁이다.
- ④ 재판상 담보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선례에 의하면,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채무자를 위하여 가압류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문40】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선례는 부동산 공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② 공탁통지가 되지 않으면 피공탁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공탁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 ③ 선례에 의하면, 조세채무나 연금보험료채무 등 공법상의 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변제자는 구두의 제공을 할 필요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41】 공탁서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 ① 공탁 후 피공탁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다.
- ②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그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기재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정정은 허용된다.
- ④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은 가능하다.

【문42】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설정계약 외에 공탁통지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② 확정일자 없는 질권설정의 통지라도 공탁공무원이 질권설정통지서를 받고 그 통지서에 접수연월일시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질권자는 집행권원 없이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탁소에 제출하는 공탁물회수청구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피공탁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문43】 다음 중 혼합공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②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③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 ④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 ⑤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문44】 다음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공탁물지급청구시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예규에 의함)

- ①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은 위임장에만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을 인감증명 대신 제출할 수 없다.
- ②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의 국민이 공탁물회수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위임장에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외국인의 공탁물지급청구시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공증인이 그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거주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그 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문4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②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는데 그 중 1개월분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무효이다.
- ③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 대신 대납한 전기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

【문46】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 ① 금전소비대차채무는 변제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제공일까지의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기한 전에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②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가해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공무원은 그 공탁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한다.
- 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문47】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한다.
- ③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 ④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 ⑤ 착오공탁의 경우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문48】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갑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갑 또는 병
- ⑤ 갑 또는 을 또는 병

【문4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공탁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자조매각절차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허가절차의 비용 및 목적물의 경매비용을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공제하고 그 잔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경우에 그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 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문50】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공탁당사자 본인이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③ 공탁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열람 신청이 있으면 공탁공무원은 공탁관계서류의 인증 사본 또는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 ④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는 되지 않는다.
- ⑤ 지급이 완결된 공탁에 관한 서류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못한다.